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종 과세정보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국세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II. 검토의견

1.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 안 제36조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 및 고용 관련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해당 정보에는 사업자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 특히, 다른 입법례의 경우 개별적·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과세정보 등을 요청하고 있는 점²⁾,
- 반면 안 제36조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의 세부내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까지 요청·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정보의 요청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개인 또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 전체 소상공인 현황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 업무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등이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각 호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기업부장은 소상공인정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 ----- ----- ----- ----- ----- -----.
1.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 ----- -----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가. ----- ----- -----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2) (개정안과 같음)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3) (개정안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나. ----- ----- -----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2) (개정안과 같음)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3)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시작일·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u>총액 및 그 세부내역</u> 3) <u>영업손익</u> 4) <u>당기순손익</u> 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내역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 관리비 <u>총액 및 그 세부내역</u> 3) <u>영업손익</u> 4) <u>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u>	<삭 제> 다. (개정안 라목과 같음) 라. ----- ----- ----- ----- 1) (개정안과 같음) 2) ----- <u>총액</u> <삭 제> <삭 제> 마. ----- ----- ----- 1) (개정안과 같음) 2) ----- <u>총액</u> <삭 제> <삭 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5) 법인세비용 6) 당기순손익 <u>사.</u>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 <u>아.</u>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정보 <u>자.</u> 다음에 따라 전송·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u>차.</u>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u><삭 제></u> <u><삭 제></u> <u>바.</u> (개정안 사목과 같음) <u>사.</u> (개정안 마목과 같음) <u>아.</u> (개정안 자목과 같음) <u>자.</u> (개정안 차목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따른 피보험자 수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2. 자료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필요 등

- 안 제36조제3항³⁾에서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윤 상 열)

3)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연구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